|  |  |  |
| --- | --- | --- |
| **환경영향평가 위법항목 책임추궁을**  **더욱 강화하는데 관한 통지**  환판함[2015]38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 환경보호국, 해방군 환경보호국, 환경보호부 각 환경보호감독센터:  중앙 순시조의 피드백 의견을 실제로 반영되도록 하고고, "허가없이 먼저 건설", "자의적으로 중대한 변경 실시" 등 환경영향평가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환경영향평가 위법항목 책임추궁을 진일보 강화하기 위해, 《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건설항목 환경보호관리조례》,《환경보호 위법행위처분 잠정조례》 등 관련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유관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각급 환경보호 부문은 법에 따라 "허가를 거치지 않고 먼저 건설", "자의적으로 중대한 변경 실시" 등 환경평가 위법행위가 존재하는 건설항목에 대해 엄격하게 행정처벌을 부과해야 한다. 건설단위가 국가기관이나 국유기업·사업단위이면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환경보호 위법행위처분 잠정조례》의 요구내용 대로 동급 기율감찰기관에 이송하여 건설단위 관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서류가 비준되지 않았거나 중대한 변동사항에 대한 환경평가 심사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항목이 거의 완공된 경우  (2) 환경영향평가 서류가 비준되지 않았거나 중대한 변동사항에 대한 환경평가 심사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자연보호구역, 명승지풍경구역, 음용수 수자원보호구역 등 환경 민감지역 내에서 건설에 착공한 경우  (3) 환경영향평가 서류가 비준되지 않았거나 중대한 변동사항에 대한 환경평가 심사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건설에 착공하여, 중대한 환경오염 또는 심각한 환경파괴를 일으킨 경우  (4) 건설항목이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았고, 건설 중지를 명령받았으나 집행을 거부한 경우  (5) 건설항목에 필요한 부속 환경보호시설이 완공되지 않았거나, 검수를 거치지 않았거나 검수에 불합격한 상태에서, 주체 공정이 정식으로 생산을 시작하였거나 이미 사용 중인 경우  책임 추궁이 완결되기 전까지, 각급 환경보호 부문은 해당 환경심사허가 또는 준공환경보호 검수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2. 각급 환경보호부문이 건설항목 환경평가심사허가, 준공환경보호검수 신청을 접수할 때, 먼저 건설항목에 환경위법행위 및 그에 따른 행정처벌, 시정명령에 따른 개조, 책임추궁 등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 환경위법행위가 존재하는 건설항목에 대해서는, 건설단위에게 주동적이고 사실대로 신청 서류에 관련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3.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처벌에서 요구한 대로 개조를 제대로 마치지 않은 환경위법 항목에 대해서는, 환경평가서류 및 준공환경보호 검수신청을 접수해서는 안 된다.  환경위법행위를 은폐하여 환경심사허가 또는 준공환경보호 검수 단계에 진입한 경우, 발견 즉시 심사와 검수 절차를 종료하고 환경보호서류와 검수신청을 반려하며, 그 건설단위의 행위를 환경보호부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폭로한다.  사기, 수뢰 등 정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환경평가 허가를 받았거나 준공환경보호 검수를 통과한 경우 법에 따라 이를 철회해야 한다.  4. 새로 발견된 환경위법항목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경우, 규정에 따라 검찰기관에 이송해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위법항목을 이송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벌을 시행하지 않았거나 시정명령에 따라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환경평가 위법항목을 환경평가 심사허가 및 환경보호검수에서 통과시킨 경우, 규율과 규정에 근거하여 환경보호부문의 관련 업무인원 책임을 추궁한다.  5. 환경위법 항목의 행정처벌 및 책임추궁 결과는 사회에 공개하고, 관련 정보는 실시간으로 사회 신용시스템에 반영한다.  환경보호부 판공청  2015년 3월 18일 |  | **关于进一步加强环境影响评价**  **违法项目责任追究的通知**  环办函[2015]389号  各省、自治区、直辖市环境保护厅（局），新疆生产建设兵团环境保护局，解放军环境保护局，环境保护部各环境保护督查中心：  　　为整改落实中央巡视组反馈意见，有效遏制新出现的“未批先建”“擅自实施重大变动”等环境影响评价违法行为，进一步加强环境影响评价违法项目责任追究，根据《环境保护法》《环境影响评价法》《建设项目环境保护管理条例》和《环境保护违法违纪行为处分暂行规定》等相关要求，现将有关事项通知如下：  　　一、各级环境保护部门应当严格依法对存在“未批先建”“擅自实施重大变动”等环评违法行为的建设项目实施行政处罚。对于建设单位性质为国家机关、国有企事业单位，且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按照《环境保护违法违纪行为处分暂行规定》要求，移送同级纪检监察机关追究建设单位相关人员责任：  　　（一）环境影响评价文件未经批准或重大变动未经环评审批，建设项目基本建成的；  　　（二）环境影响评价文件未经批准或重大变动未经环评审批，擅自在自然保护区、风景名胜区、饮用水水源保护区等环境敏感区内开工建设的；  （三）环境影响评价文件未经批准或重大变动未经环评审批，擅自开工建设，造成了重大环境污染或严重生态破坏的；  （四）建设项目未依法进行环境影响评价，被责令停止建设，拒不执行的；  　　（五）建设项目需要配套建设的环境保护设施未建成、未经验收或验收不合格，主体工程正式投入生产或使用的。  　　在责任追究完成前，各级环境保护部门不得通过其环评审批或竣工环境保护验收。  　　二、各级环境保护部门收到建设项目环评审批、竣工环境保护验收申请时，应当首先对建设项目是否存在环评违法行为及其行政处罚、整改、责任追究等情况进行审查。对存在环评违法行为的建设项目，应当要求建设单位主动、如实在申请文件中说明相关情况。  　　三、对于未依法实施行政处罚、未按处罚要求整改到位的环评违法项目，一律不予受理其环评文件、竣工环境保护验收申请。  　　对于通过隐瞒环评违法行为进入环评审批或竣工环境保护验收流程的，一经发现，立即终止审批或验收程序，退回环评文件或验收申请，在环境保护部门网站对建设单位予以曝光。  　　对于通过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取得环评批复或通过竣工环境保护验收的，应当依法予以撤销。  　　四、对新发现的环评违法项目不及时予以查处的，对按规定应当移送纪检监察机关追究责任的环评违法项目不移送的，对未实施行政处罚、未按要求整改到位、未按规定追究责任的环评违法项目通过环评审批或竣工环境保护验收的，应当依纪依规追究相关环境保护部门工作人员责任。  　　五、环评违法项目的行政处罚和责任追究结果向社会公开，相关信息适时纳入社会诚信体系。  　　环境保护部办公厅  　　2015年3月18日 |